

# 「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4월 09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04월 1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6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1년 04월 19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일자리경제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된 본 조례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현실적 여건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며,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관련 조례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률」로 전통시장 관리·육성

#### 나. 주요내용

-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‘19년 11월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가  
제정되었고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
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